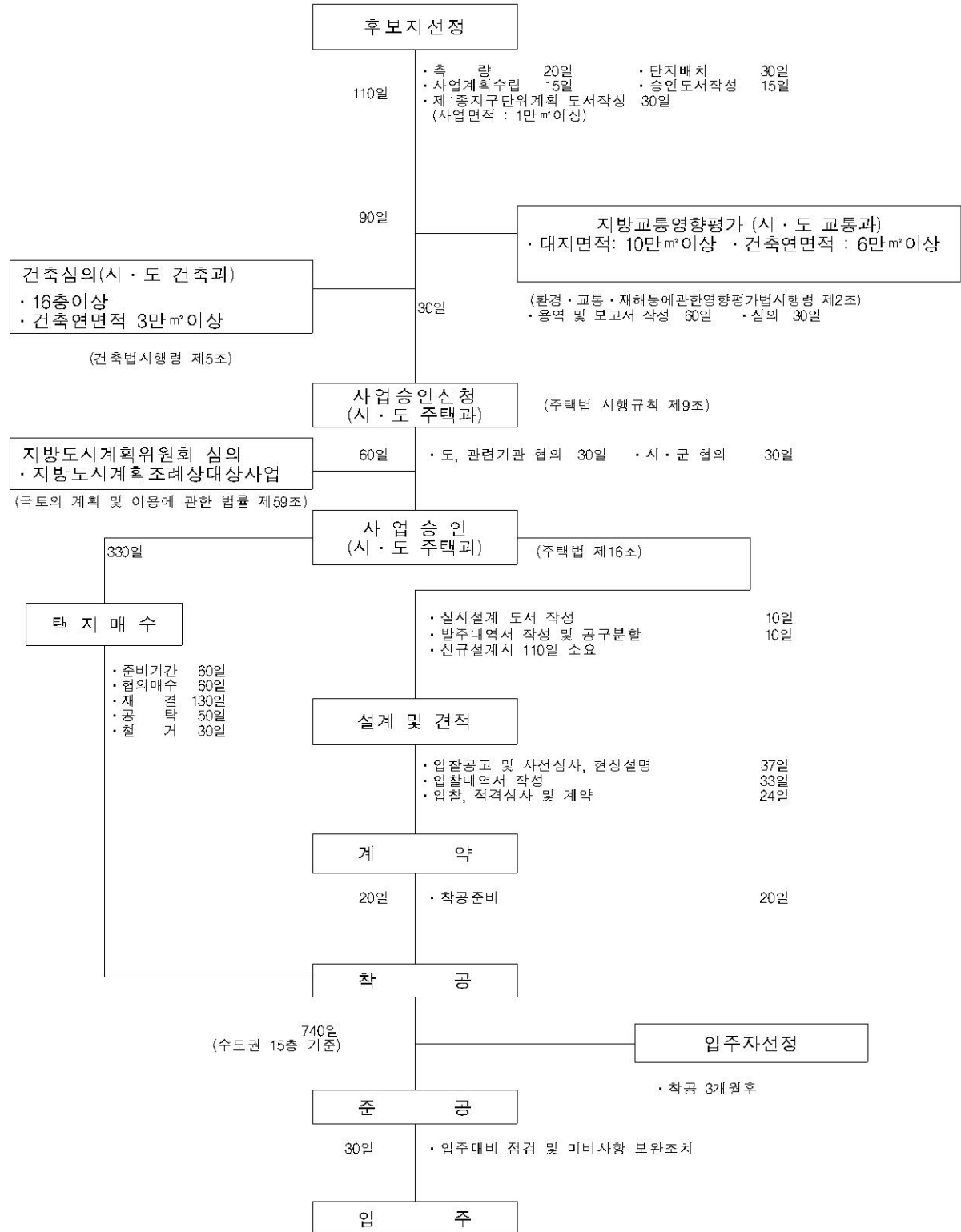


제2절 사업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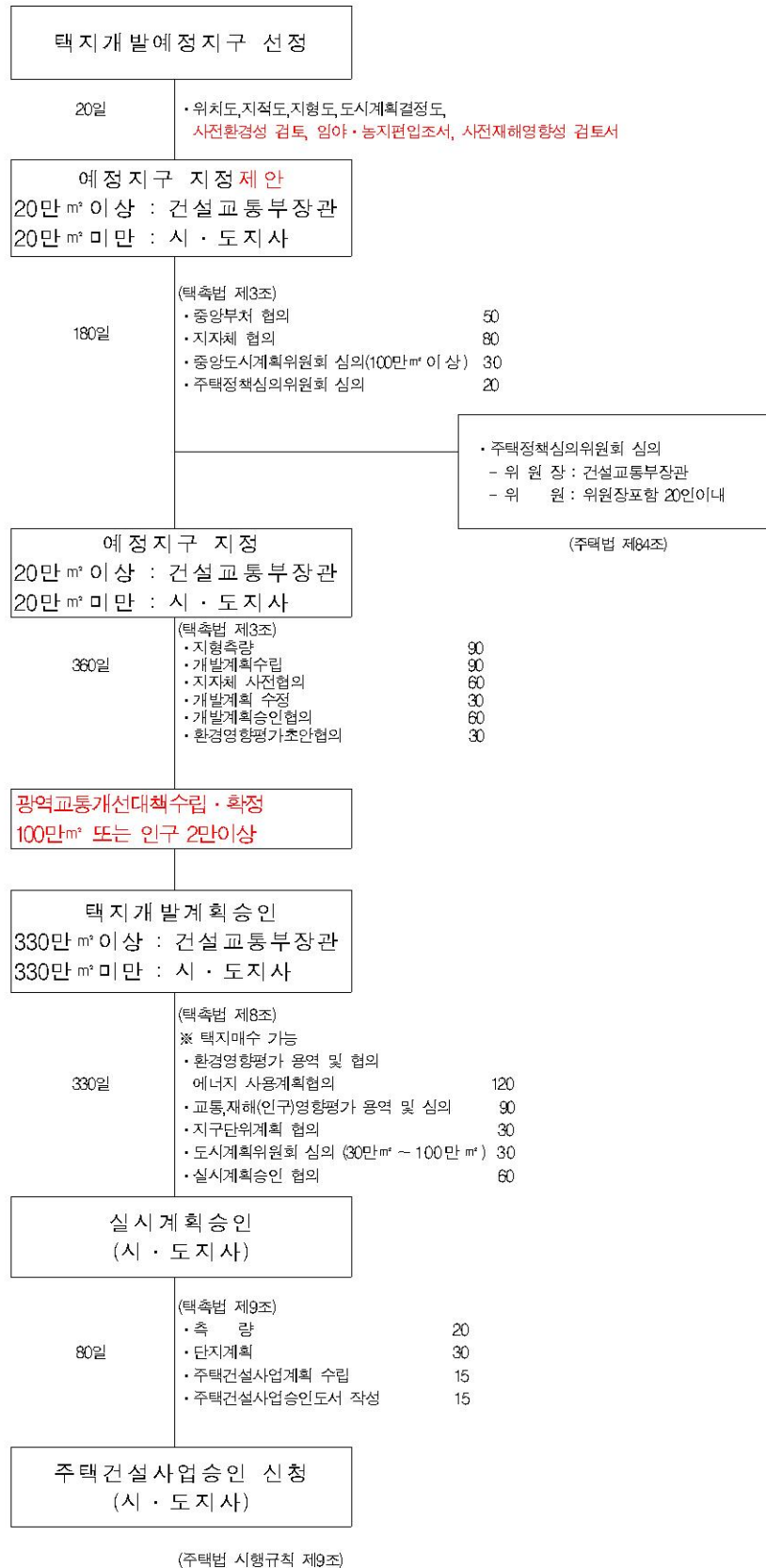
2.1 주거지역

※ (후보지선정시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10개월, 입주시까지 3년 9개월)



2.2 택지개발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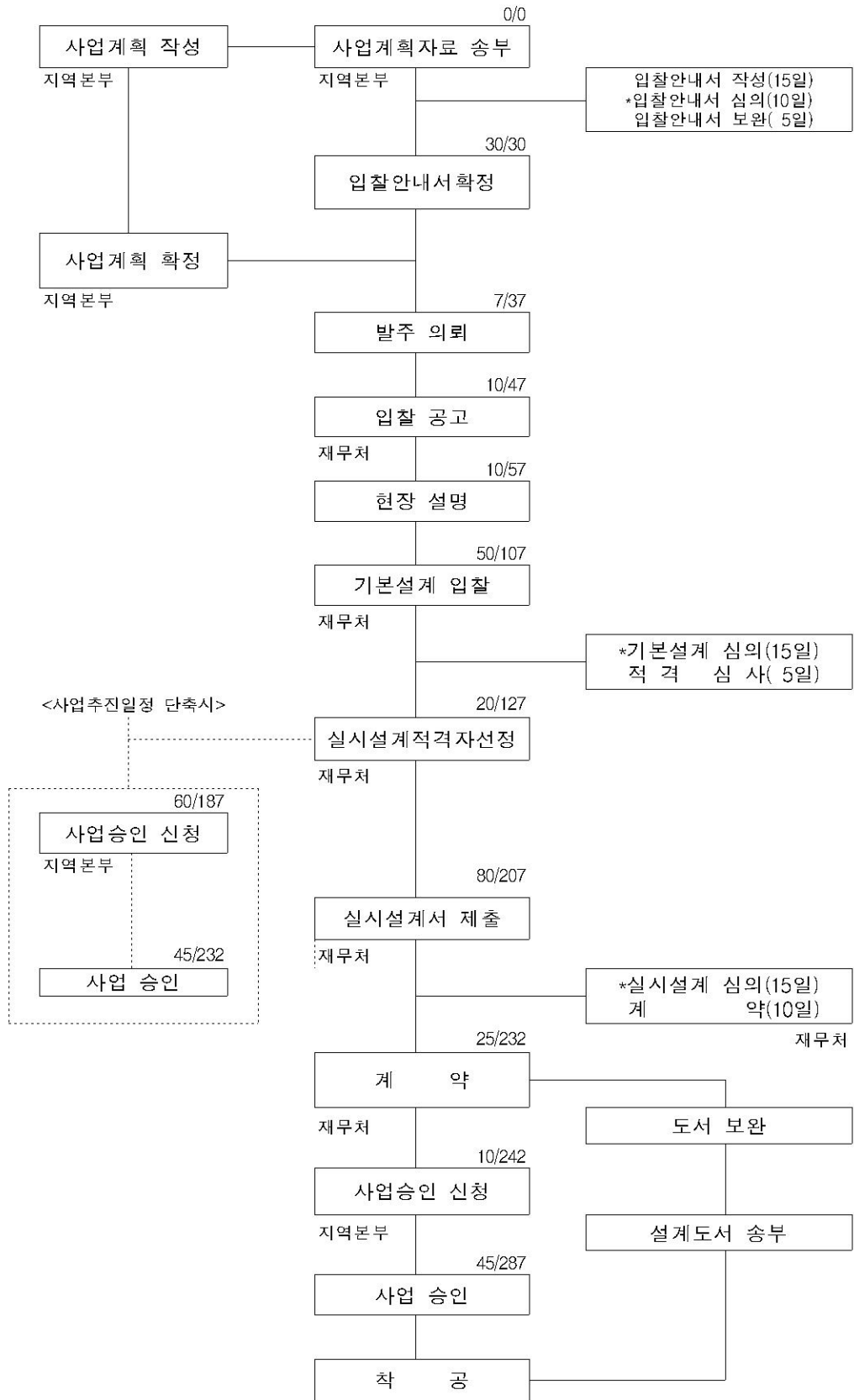
※ 택지개발예정지구 선정시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2년 10개월, 입주시까지 4년 11개월



※ 사업승인 신청부터 입주시까지는 주거지역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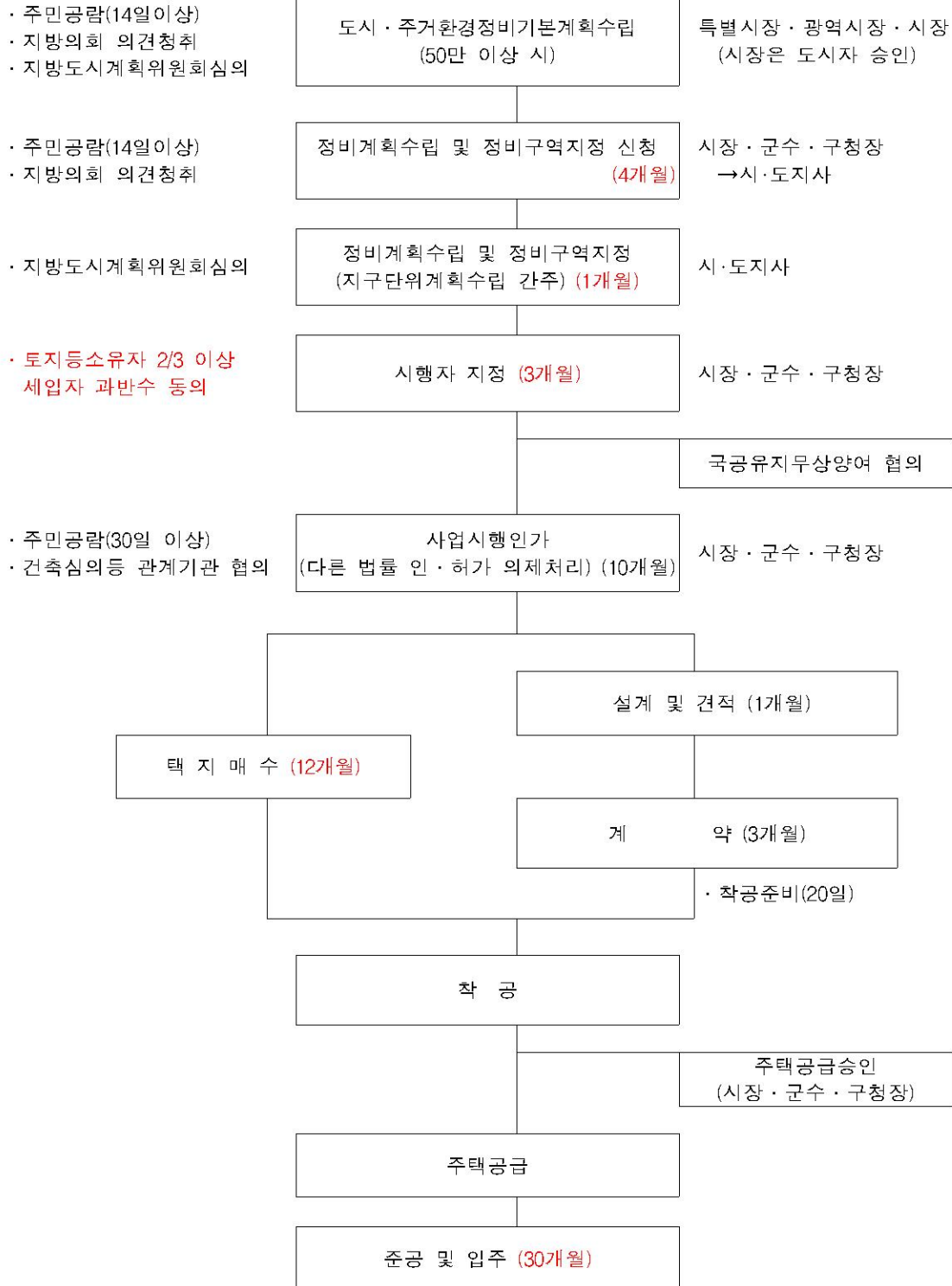
2.3 턴키지구

※ 사업계획(안)작성시부터 착공까지 9개월 소요 / 후보지 선정단계 별도 계상



2.4 주거환경개선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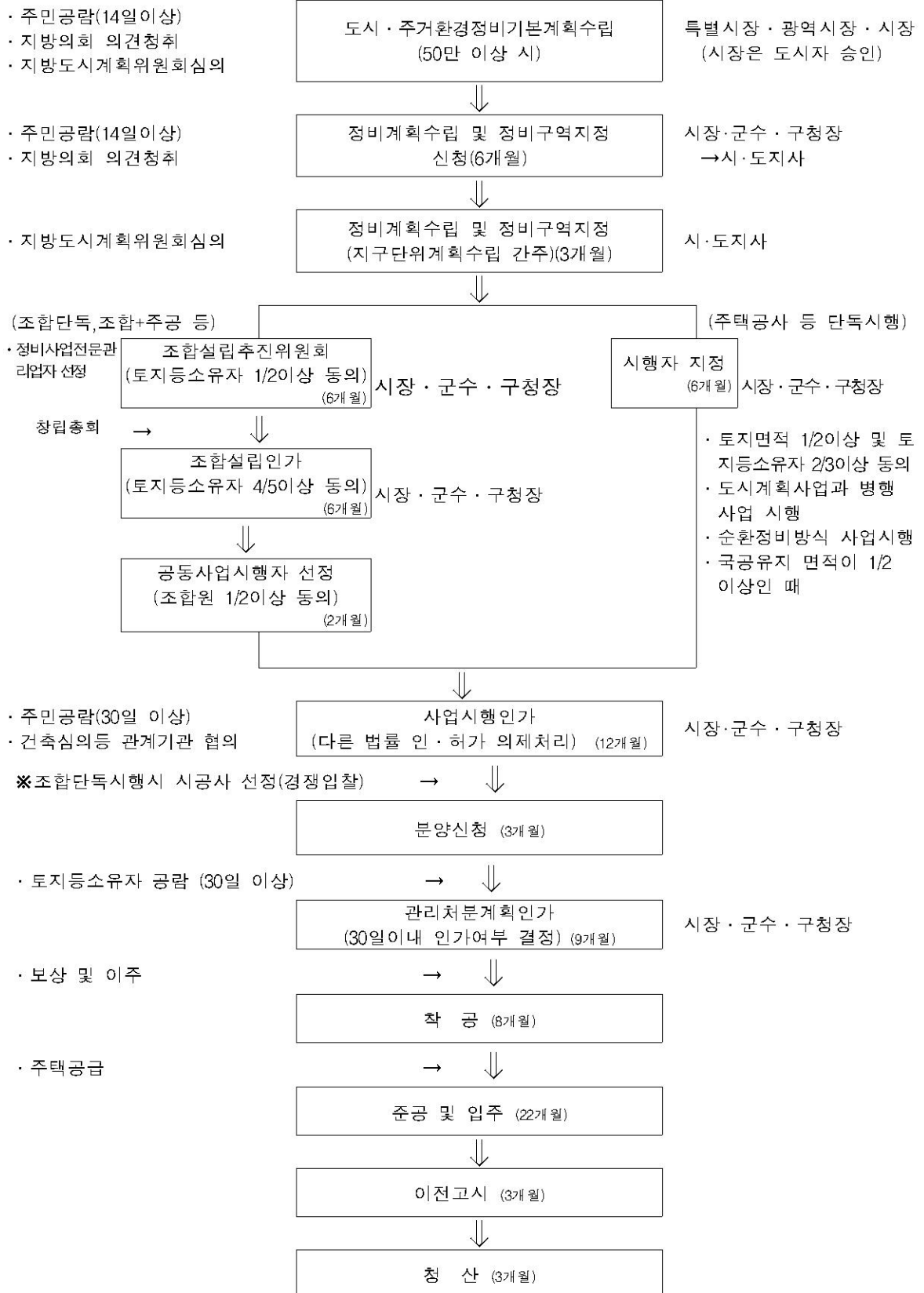
※ 정비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18개월, 사업완료시까지 5년



※ 구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정·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'07.06.30까지 구법 절차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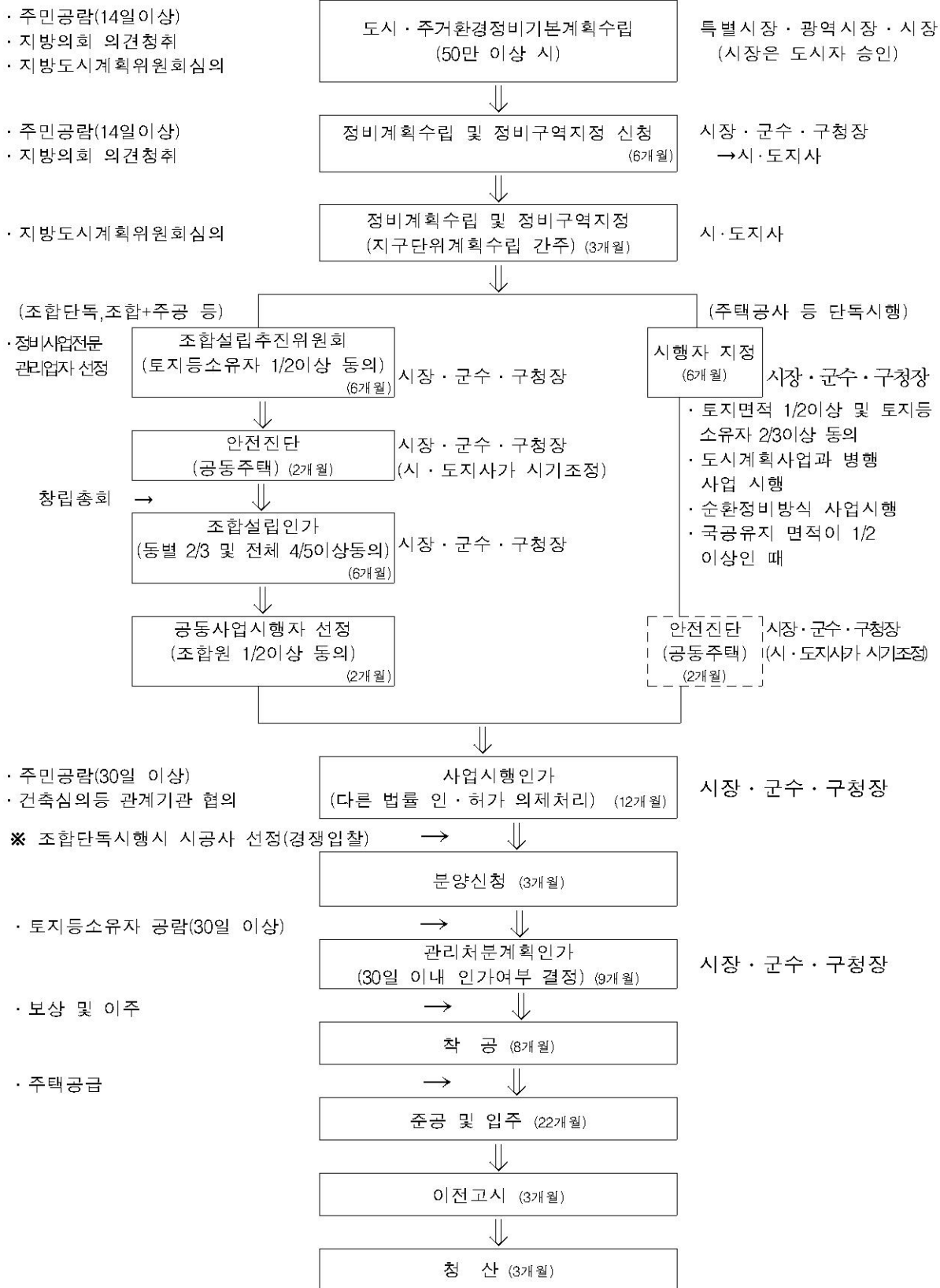
2.5 주택재개발사업 · 도시환경정비사업

※ 정비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27개월, 사업완료시까지 6년3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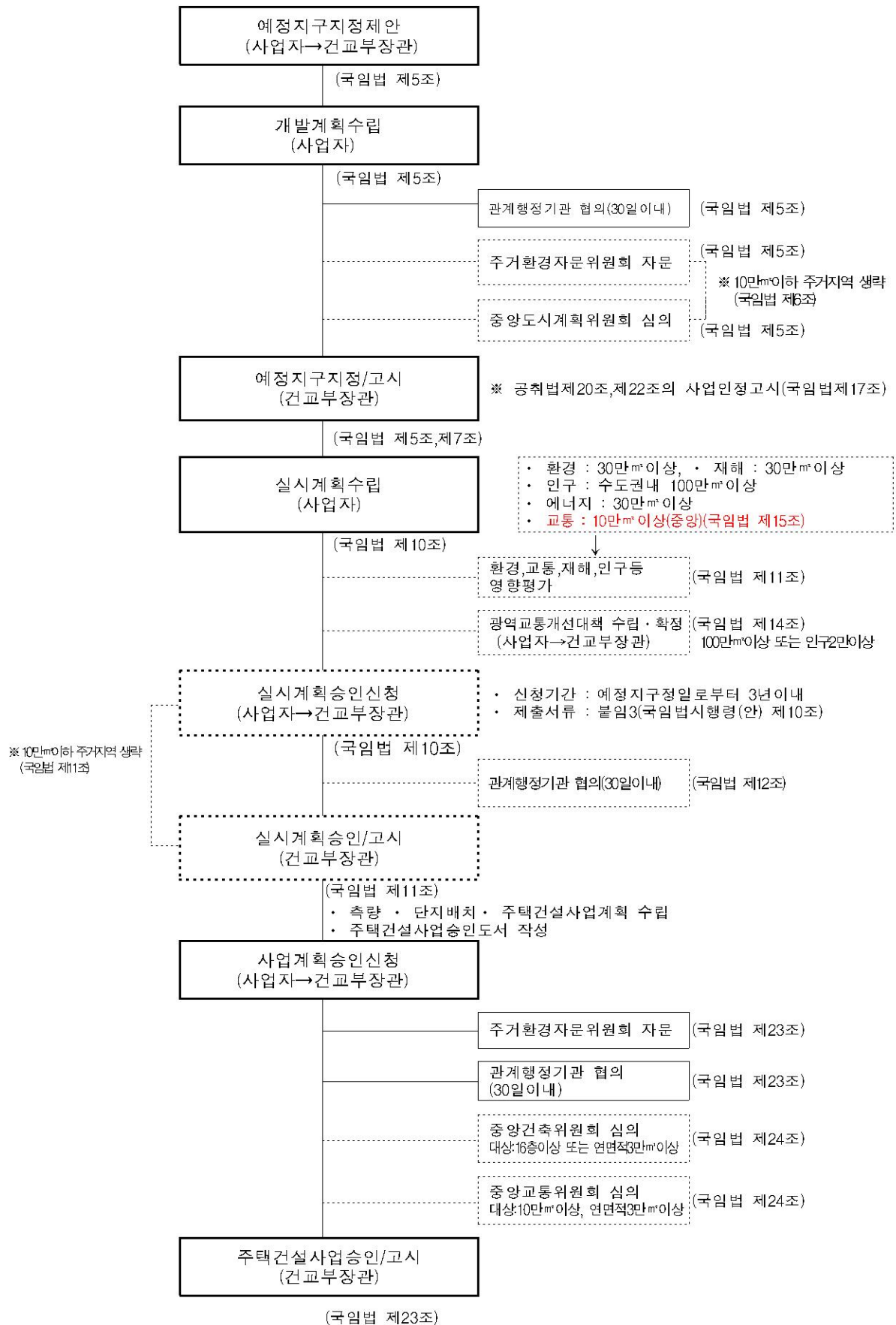


2.6 주택재건축사업

※ 정비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29개월, 사업완료시까지 6년5개월



2.7 국민임대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('04. 7. 1시행)



2.8 대형공사

2.8.1 관련법
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('03.12.11)

2.8.2 용어정의(동법 시행령 제79조)

- ① 대형공사 :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
- ② 특정공사 :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,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설계·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2.8.3 입찰방법(동법 시행령 제79조)

- ① 일괄입찰 :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·시공일괄입찰
- ② 대안입찰 :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
 - ※ 대안 :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(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)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·신기술·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**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**(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)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
- ③ 기타입찰 : 상기 이외의 공사입찰

2.8.4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(동법 시행령 제80조)

-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(이하 “대형공사등”이라한다)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.
-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**항**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 기본계획서를 **재**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.

2.8.5 대형공사 시행절차

